
윤석열 정부

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

- 3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함께하는 금융 -

2024. 11. 11.



금융위원회

순 서

I.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	1
1. 정책 추진 여건	1
2. 주요 성과	2
II. 주요 과제별 성과 및 향후 계획	3
1. 민생금융 활성화	3
2. 금융시장 안정	7
3. 소비자·투자자 보호	10
4. 국민자산 형성 지원	13
5. 금융산업 경쟁력·편의성 제고	15
6. 실물지원과 미래문제에 대비	18
[참고1] 금융분야 주요 성과 [통계수치]	19
[참고2] 금융분야 입법성과	21

I.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

- ◆ 윤석열 정부는 3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,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 시현

1 정책 추진 여건

① 3高 현상(고금리·고물가·고환율)이 지속되면서 **금융시장 불안**

-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주요국의 금리인상 지속, 실물경제 위축 등 경제·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*이 크게 확대

* 회사채 3년 금리/스프레드(AA-, %/bp) : ('22.4월) 3.69/73 → ('22말) 5.20/148

-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부실확대, 한계기업 증가, 금융사 건전성 악화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도 산재

② 고금리 장기화, 경쟁부족 등으로 **금융부담 가중 및 활력 저하**

- 전례 없이 길게 이어진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·자영업자·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*되고 경영 어려움 심화

* 가구당 평균이자 비용('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) : ('21) 209만원 → ('22) 247만원(+18.2%)

- 각종 규제와 금융권 경쟁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 활력은 저하

③ **소비자·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금융의 자산형성 기능 부족**

- 불법사금융, 불완전판매, 자본시장의 각종 불법·불공정 거래 등 국민들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금융범죄가 지속되는 가운데,

- 금융이 취약계층 재기지원과 청년·서민들의 자산형성 역할에 미흡

2 주요 성과 [요약]

1 과감한 시장안정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

-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운영 → 불안심리 확산 제어, 시장유동성 부족 해소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*
* 회사채 3년 금리/스프레드(AA-, %/bp) : ('22) 5.20/148 → ('23) 3.89/73 → ('24.10월) 3.50/57
-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양적·질적개선 노력으로 안정화*하고,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질서있는 연착륙 추진
* 가계부채/GDP 비율(%) : ('21)98.7 → ('22)97.3 → ('23)93.6 → ('24.2Q)91.1 (3년 연속 하향 안정)

2 민생금융과 경쟁촉진으로 금융부담 경감 및 민생활력 제고

- 대출 갈아타기*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,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총 3~4조원의 민생·상생금융 지원 추진
* 약 29만명(16조원 규모) 이용 → 평균금리가 1.53%p 하락하여, 1인당 연 176만원 이자 절감
- 역대 최대수준(연간 10조원)의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, 새출발기금과 채무자보호 법제화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
- 32년만에 시중은행 출범, 10년간 지속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권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활력을 제고

3 소비자·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

-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,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, 내부자거래 공시 의무화 등 국민의 삶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
- 청년도약계좌*, ISA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,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추진
* 가입대상 청년의 1/4 수준인 153만명 가입('24.10월말), 가입자의 90%가 납입 유지중

Ⅱ. 주요 과제별 성과 및 향후 계획

- ◆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, 청년도약계좌, 자본시장 선진화, 불법·불공정거래 차단 등 국민들의 삶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
⇒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용범위 등 확대, 제도화, 및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

1 민생금융 활성화

<세계 최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>

- 은행간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세계 최초 “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” 도입(‘23.5월)
 - ‘24.1월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을 종전 신용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거액인 주담대·전세대출까지 확대하여 이자부담 경감 효과 확대
 - 또한, 서비스 이용자와 금융권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서비스 이용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, 편의성도 개선
 - 주택담보대출의 경우,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(‘24.4월)뿐만 아니라, 오피스텔·빌라 담보대출(‘24.9월)까지 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
 - 전세대출의 경우, 대출이동 가능 기간을 임대차 기간 1/2 도과 전까지에서,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(‘24.6월)
 - 신용대출의 경우, 이용자가 저녁 시간대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마감시간을 20시에서 22시로 확대(‘24.6월)
 -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, 이용자의 높은 관심*을 바탕으로 ‘24.10월말 누적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
 - *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4영업일만에 약 1조원의 이동 신청이 접수
 - 대출금리가 평균 1.53%p 하락하여, 1인당 연 176만원 이자 절감
- ☞ (향후 추진계획)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개선과제 지속 발굴·추진

<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>

-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·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지원
 - 은행권 자율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역대 최대인 2.1조원 규모의 민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중소기업권도 0.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방안 추진 → '24.9월말까지 총 2.1조원 지원*
 - * (은행) 이자환급 1.5조원, 지원 0.6조원 시행('24.2), 1.9조원 집행(~'24.9월)
(중소) 이자환급 0.3조원 시행('24.3), 1,740억원 집행(~'24.9월)
 - 또한, 각 금융업권별로 업권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, 금리·수수료 인하, 채무감면 등에 총 1.6조원 지원
 - * 은행권 1.36조원('23.3~'24.9월), 여전업권 0.19조원 지원('23.8~'24.9월)
- 보험권은 '24년 평균 2.5% 자동차보험료 인하(약 5,200억원 발생 예상)
- (향후 추진계획) 이자환급 방안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완료하고, 향후 금융회사가 지원대상과 동반 성장·발전에 나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'지속 가능한 방식'으로 개선 및 확산

<중도상환수수료 제도 전면 개편>

-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,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, 제약 요인인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
 -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*토록 의무화('24.7월 「금소법감독규정」 개정, '25.1월 시행)
 - *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및 ②대출관련 행정·모집비용만 반영
 - 은행권 산정 시뮬레이션('24.10월, 잠정) 결과, 중도상환수수료 부담(年 3천억원)이 절반(50%) 수준(年 1,500억원)*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
 - * (주담대) 1.2~1.4% → 0.6~0.7%, (신용대출) 0.6~0.8% → 0.4% 내외
- ☞ (향후 추진계획) '25.1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을 전면 시행하되, 준비된 은행은 그 전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

<서민·취약계층 맞춤형 종합 지원>

□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, 일자리·사회복지 연계, 채무조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

① (서민금융 안정적 공급) 現 정부 들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*

* 연도별 공급실적(조원) : ('20) 8.9 ('21) 8.7 **(‘22) 9.7 (‘23) 10.6 (‘24.1~9월) 7.0**

- **금융권 출연요율 인상***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성

* ① '24.9.30일 시행령 개정 완료(0.03% → 은행 0.035%, 비은행 0.045%)

② 서민금융법 개정('24.9.20일)에 따라 은행권 출연료 추가 인상(0.06%~0.1% 범위) 예정(~'25.3월)

- 질적 측면에서도, 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**소액생계비 대출***을 지원하고 **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****하는 등 **사각지대 해소**

* (소액생계비대출) 무소득자·연체자에 대해서도 당일 최대 100만원 대출

**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확대 : 중소기업 재직 청년, 취업준비생 → 청년사업가

② (채무조정) 연체·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채무자 보호를 법제화**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 마련

- **개인채무자보호법**(‘24.10.17일 시행)을 통해 **연체이자 제한***, **추심관행 개선**** 등을 제도화하여 채무자의 일상을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

* (기준) 잔여원금 전체에 연체이자 부과 → **(개선) 기한 미도래 원금에 연체이자 부과 금지**

** (추심총량제) 추심횟수 7일에 7회로 제한, (추심유예제) 재난,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유예

- **한계 취약층의 상환능력 등 차주 특성**(취약층·청년·미취업자 등)을 고려한 **맞춤형 채무조정**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

* 기초수급자·중증장애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**소액채무 면제**, 단기연체(연체 30일 이하) 취약층 대상 **원금감면**,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시 **채무감면을 확대** 등

③ (자활지원) 서민·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, 서민금융·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고용·복지 서비스도 복합 지원

* 부처(금융위-고용부-복지부) 간 협업을 통해 복합지원 연계자 대상 고용부 고용제도 참여요건 완화, 서민금융상품 금리인하 등 복합지원 참여 유인·혜택을 지속 확대

⇒ 제도 시행 이후, 서금센터 방문자(481,407명) 중 15,566명(3.2%)에 고용지원, 49,450명(10.3%)에 복지지원 연계('24.1~10월 누적)

☞ (향후 추진계획) 안정적인 수준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면서 '24.10월 발표한 취약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*을 차질없이 추진

* 저소득 청년 대상 초저금리(2%) 대출,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(최대 5년) 등

<새출발기금을 마련하여 자영업자 재기 지원>

□ 코로나 피해,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도입('22.10월)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

- 2차례('24.2월, 9월) 제도개선 이후 새출발기금 신청은 큰 폭* 증가 추이

*월평균 신청액 : 9,216억원 (당초,~'24.1월) 4,973억원 → 1차확대,('24.2월~9월) 7,668억원)

< '24.9.12일 시행 제도개선 주요 내용 >

- ① (지원대상) '20.4월 ~ '24.6월 중 영업한 경우로 확대
(당초) 코로나19 피해 입증 차주 → ('24.2월) '20.4월~'23.11월 중 사업영위 차주
- ② (신청기간) '26년말까지 신청 기간 연장 (당초) ~ '25.10월까지)
- ③ (부실·폐업자) 취업/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을 우대(최대 10%p ↑ / 최대 90%)

⇒ 총 15.0조원(9.3만명) 신청하여, 4.5조원(5.5만명) 약정('24.10월말 기준 / 잠정)

☞ (향후 추진계획)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, 채무조정과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강화*를 통해 실효성 제고

*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 추가 확대, 취업·재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즉시해제(현재 1년 유지) 등

<참고> 성실상환자 신용사면 조치('24.5월)

- 연체금액(2천만원 이하)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정보 삭제 → 개인 약 266만5천명, 개인사업자 약 20.3만명이 혜택

* '21.9.1일부터 '24.1.31일까지 소액(2천만원 이하)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'24.5.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

2 금융시장 안정

<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 프로그램 구축·운영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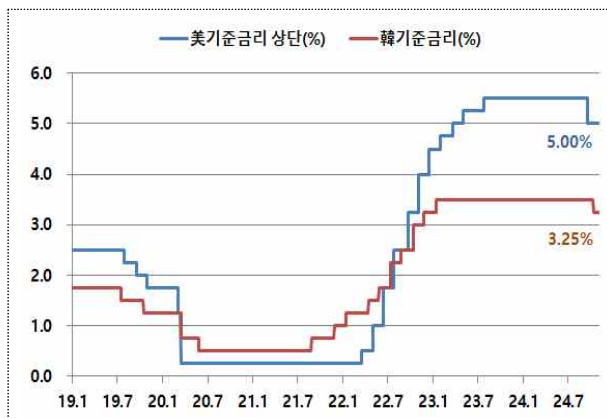
□ 기재부·한은·금감원 등 관계부처·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운영하여 팬데믹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급변, 러·우 전쟁·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유지

○ '22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, '22.하반기 예상 밖의 신용이벤트가 발생하며 자금시장 신용경색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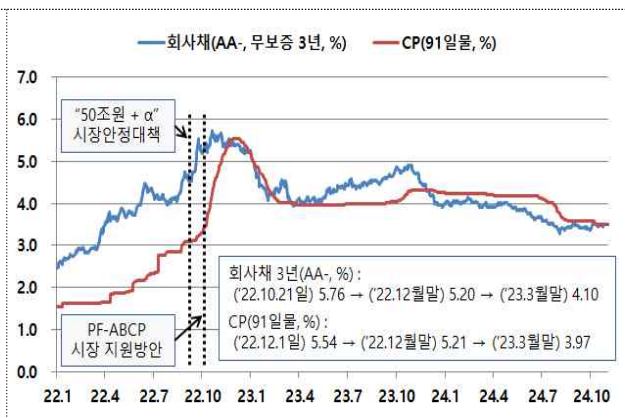
⇒ “50조원+α 시장안정 프로그램(‘22.10월)” 가동 등 신속·과감하고 종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조기 안정*시키고 피해 최소화

* 회사채 3년(AA-) : (22.6월) 4.36 (22.9월) 5.28 (22.10.21) 5.76^{年高} (22.12월) 5.20 (‘23.3월) 4.10
CP(3개월, A1) : 2.33 3.27 (22.12. 1) 5.54^{年高} 5.21 3.97

< 韓·美 기준금리 변화 >



< 회사채·CP 금리 변화 >



○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에 PF 등 부동산 시장 안정조치*를 추가하여 94조원+α 규모로 확대(~'24.8월)

*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(최대 35조원) 등을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고, PF 정상화 지원 펀드(최대 2.7조원)로 재구조화 추진 등

⇒ 강화된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,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조기 차단

☞ (향후 추진계획) 가동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 하면서,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및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유연하게 검토

<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>

□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면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을 구축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

- 기존 **LTV·DTI 규제**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강화되어 주택금융 이용과 비용에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**정상화 추진(국정과제)**
 -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·금융애로를 완화

< LTV 규제 정상화 >

구 분		'17년이전	'19~'21년	'22~'23년(규제 정상화)
규제	1주택	70%	20~40%	20~40% → 50%
	다주택		0%	0 → 30%
비규제	1주택	70%	70%	70%
	다주택		60%	60%

- 차주단위 DSR 확대(총 대출 2억원초과 → 1억원초과, '22.7월), 스트레스 DSR 도입 및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관행 확립
 - 이와 함께 업권 간담회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DSR 중심의 여신심사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

⇒ **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3년 연속 하향 안정화*** 달성

(‘04년 이후 비율 하락은 ‘22년이 처음이며, 3년 연속 하락)

* 가계부채/GDP 비율(%): (‘21)98.7 → **(‘22)97.3** → **(‘23)93.6** → **(‘24.2Q)91.1**

☞ (향후 추진계획) 상환능력 심사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*하여 현 정부 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립

* DSR 규제의 단계적 내실화, 은행권 관리목적 DSR 산출 및 자율관리 등

- 가계부채 증가추이 및 양상을 보아가며, 필요시 상황별 적합한 관리수단*을 적기 시행

*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부과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,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조정 및 소득심사 강화 등

<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>

□ '22.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는 PF-ABCP,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PF의 “질서있는 연착륙”을 추진

○ 건설·시행·금융업권 등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'24.5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고 일관되게 추진

< 「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」(5.14일) 주요 내용 >

- 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PF 사업장 ‘**옥석가리기**’ 유도
 - * 현행 3단계(양호·보통·악화우려)를 4단계(양호·보통·유의·부실우려)로 세분화
- ② 사업성이 충분한 **정상사업장은 신규자금** 등 금융을 확실하게 공급
 - * 사업자보증, 수수료 부담 완화,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자금애로 겪는 사업장에 추가보증 제공
- ③ **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·정리** 추진
 - * 대주단 협약개정(만기연장 요건 강화), 경·공매 기준 마련 등 재구조화·정리 여건 마련
- ④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·건설사·금융회사에 **부정적 영향 최소화**
 - * 금융권 자금유입 유도 위해 한시적 규제완화, 재구조화·정리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

□ 그 결과, 금융시장과 연체율이 다소 안정화 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·관리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

○ 레고랜드 사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PF-ABCP 발행금리·스프레드*가 정상 수준으로 하락 안정화 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적

* PF-ABCP 발행금리/스프레드 : ('22.11월) 7.46%/411.8bp, (**'24.8월**) **3.78%/49bp**

○ 금융권 PF대출 연체율*도 직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

* 금융권 PF대출 연체율(%) : ('22말)1.19 → ('23말)2.70 → ('24.3말) 3.55 → ('24.6말) 3.56

☞ (향후 추진계획) **부동산 PF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**을 관계기관(기재부, 국토부 등)과 마련중이며 '24.하반기 발표할 계획

* ①시행업계 내실화, ②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, ③PF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시장참여자 건전성 관리, ④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

3 소비자·투자자 보호

<불법사금융·보이스피싱 척결>

□ 다양한 신종수법의 불법사금융·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속·처벌 강화, 피해자 구제,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

- 「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(22.9월~)」,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(22.8월~)」에 적극 참여하여 관계부처·기관과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대응
- 동일한 보이스피싱 피해임에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‘대면편취형’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등 추진(23.11월)
- 검색포털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플랫폼사에 대한 광고 사전심사 절차 시행(24.11월) * 국내사는 既 시행
-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진행(23.12월), ‘지인추심’ 등으로부터 채무자의 가족·지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(24.7월)

○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,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“**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***” 발표(24.9월)

- * 1)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업자 이자효력 제한(6%, 상사법정이율)
- 2)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처벌수준 대폭상향, 3)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등

☞ (향후 추진계획)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입법(대부업법 개정) 논의 적극 지원

<ELS 피해자 적극 구제>

□ H지수 기초 ELS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장 조사 및 민원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분쟁조정기준을 마련(24.3월)

○ 은행권을 중심으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된 소비자와 자율배상을 추진 중이며, 자율배상 동의율은 85.7% 수준(24.9월말)

☞ (향후 추진계획)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*을 조속히 마련·추진

- * 예: ①판매규제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도·관행 개선, ②불완전판매 예방 내부 통제 체계 확립, ③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등

<자본시장의 불법·불공정 차단>

- 공매도를 금지하고, 공론화를 거쳐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
 - 불법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, 공매도 금지 조치('23.11.6.~'24.3.30.)
 - 전문가, 국내·외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도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여,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4.6.13.)
 - 불법 공매도의 사전 예방·전수 점검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
 -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(90일+연장, 최장 12개월)하고 기관·개인의 담보비율을 통일해 공매도의 '기울어진 운동장' 해소
 -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,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형벌 강화, 금융투자상품 거래·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 다양화
 - 주요 글로벌IB의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, 최초의 과징금 부과('23.12월)·형사 기소('24.3월) 등 불법 공매도에 엄정 대응
-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
 - ① (내부자거래)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, 상장사 임원·대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 사전공시('24.7월~)
 - ② (M&A) 공시, 외부평가 및 합병가액 산출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M&A의 기반 마련
 - ③ (자사주)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이 되지 않도록, 인적분할시 의결권이 부활하는 “자사주 마법” 금지('24.6월 입법예고)
- ☞ (향후 추진계획) 진행 중인 제도개선을 완료하고, 신규과제 발굴·추진
 - '25.3.31일까지 전산시스템 구축, 하위법령 정비('24.10.22 공포 자본법 후속) 등 공매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
 - 물적분할, 합병 등 일반주주 보호 미흡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

<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>

□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

○ 「**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**」*을 제정('23.7월)하여 '**24.7월부터 시행**

* 이용자 예치금·가상자산 보호, 불공정거래행위 금지, 금융당국의 감독·제재 권한 규정

○ 영업종료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하기 위해 "**디지털자산보호재단**"을 설립('24.9.26일 설립허가)

□ (**향후 추진계획**)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**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***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

* 법인 실명계좌 발급,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, 사업자 진입·영업행위 규제 등

<전자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강화>

□ 선불업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**선불충전금 별도 관리** 등 전자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('24.9월 개정 전금법령 시행)

< 주요 내용 >

○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을 확대*하여 규제 사각지대 축소

* (업종) 前구입가능 업종 2개 이상만 규율 → 後삭제(1개 업종만 구입 가능해도 규율)

○ 선불충전금은 전액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계·압류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보호

○ 가맹점 축소 등 이용 조건 변경 시 전액 환급 의무 부과,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만 할인발행이 가능토록 행위규칙 강화

☞ (**향후 추진계획**)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·판매자 보호를 위한 **PG업 제도개선 추진**(10.31일 전금법 개정안 발의)

○ **정산대상금액 전액 별도관리(예치·신탁·지급보증) 의무화** 및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·담보제공, 제3자의 압류·상계를 금지

* 의무 준수부담 고려, 적절한 경과기간 부여(시행시) 60% → (1년 후) 80% → (2년 후) 100%)

- 경영지도기준 및 별도관리의무 未준수시 실질적인 관리감독 근거 마련

* ❶시정요구 → ❷(미이행시) 영업정지 → ❸(미이행시) 등록취소 등

4 국민자산 형성 지원

<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: 청년도약계좌 활성화>

□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·운영('23.6월~)

* 상대적으로 높은 적금 금리(최대 6%)에 더해, 정부에서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여 5년 만기시 최대 5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

□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

① (지원대상 확대) 육아휴직자, 군 장병 등의 가입을 허용하고,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80% 이하에서 **250% 이하로 합리화**(‘24.1Q)

② (생애맞춤형 지원) 청년 생애주기상 긴급자금 수요가 많은 만큼, 결혼·출산·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으로 해지시에는 **소혜택 유지**(‘24.1Q)

③ (가입유지 지원) 3년 이상 유지하면 해지하더라도 **혜택 일부**를 지원하고, 성실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및 **부분인출서비스** 지원(~'24.4Q)

④ (수익률 제고) 기여금 지원 수준을 **확대**(現 월 최대 2.4만원→3.3만원)하여 연 최대 **9.54%**의 일반적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 지원 추진(~'24.4Q)

⑤ (컨설팅 지원)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재무·신용분석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**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** 구축(~'24.4Q)

⇒ 가입대상 청년의 **4명 중 1명** 수준인 **153만명이 가입**(‘24.10월말)하고, **가입자의 약 90% 수준이 납입을 꾸준히 유지**하며 자산을 축적 중

☞ (향후 추진계획)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과제*를 조속히 추진하고 청년층과 지속 소통

* ①가입유지 지원(3년 이상 유지 지원 등), ②수익률 제고(기여금 지원 확대), ③컨설팅 지원

<자본시장을 국민자산 형성의 장으로 재편>

□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, **투자 세제를 과감히 개편**(‘24년 정부 세법개정안)

- ① (금투세 폐지) 증시 자금이탈 방지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, 당초 '23년 도입 예정이었던 **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** 결정
- ② (ISA 개편)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를 모두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신설 예정

< ISA 개편방안 주요내용 (‘24년 세법개정안) >

[일반투자형 ISA]

- (가입요건)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外
- (비과세한도)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
- (납입한도) 연 2천만원, 총 1억원



[일반투자형 ISA: 혜택 확대]

- (비과세한도) 500만원(서민형 1천만원)
- (납입한도) 연 4천만원, 총 2억원

+

[국내투자형 ISA: 신설]

- (가입요건)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가입 가능(14% 분리과세)
- (운용자산) 국내주식·국내주식펀드

□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,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**기업 밸류업** 추진

- ① (밸류업 공시) 「**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**」을 제공하여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* 공시·소통·이행을 지원(‘24.5월~)

* '24.11.7일 기준, 68개 기업 공시(본공시 38개사, 예고공시 30개사)

- ② (밸류업 세제)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및 가업 승계시 세 부담을 경감하고, 해당 기업 주주에도 배당소득 세제혜택 제공
- ③ (밸류업 ETF) 밸류업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 출시(‘24.11월)

☞ (향후 추진계획)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, 우수기업 표창·인센티브 제공* 등 밸류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

* 5종 세정지원,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심사시 가점 등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예정

5 금융산업 경쟁력 · 편의성 제고

<32년만의 시중은행 출범 등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>

□ 은행권에 새로운 경쟁자를 진입시켜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 촉진을 유도

-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허용, 신규인가 추진 등 방침을 발표('23.7월)하고, 대구·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인가('24.5월)하여, 32년만에 시중은행 출범

☞ (향후 추진계획) 다른 지방은행 등도 전환* 신청시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위한 절차**도 차질없이 추진

* 지방은행 → 시중은행 / 저축은행 → 지방은행 등

** 심사기준 발표('24.11월) 및 관련절차(예비인가 신청·심사 등) 추진

<10년간 지속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>

□ '13년 도입 이후 10년간 유지되어온 경직적인 금융권 망분리 규제*를 과감하게 개선하여, 금융권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, 생성형 AI 등 신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

* '13.3.20.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'금융권' 물리적 망분리 도입

- 망분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정범위 내에서 생성형 AI 활용 등을 허용하는 「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*」 발표('24.8월)

* "망분리=보안통제"라는 틀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('24.4~6월)하여 개선 필요과제 논의

- 개선방안 발표 이후 약 2개월간 망분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141건 접수되는 등 금융산업 혁신 가속화에 기여

☞ (향후 추진계획) 망분리 규제샌드박스 신청건(74개사, 141건)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여 12월부터 순차 허용

- '25년 중에는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검증하여 정규 제도화 추진

<15년간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실시>

□ 전국민 보험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시

-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조율 및 갈등관리를 통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('09년) 이후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 완료('23.10월)
- 법 시행 후 총 4,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청구 전산화가 점차 확산

⇒ 국민들이 창구 방문,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, 그간 포기되었던 소액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☞ (향후 추진계획) 의원·약국('25.10월 시행)을 비롯한 미참여 병원과 소통을 강화*하여 참여 확대를 지속 유도

* 법정기구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를 통한 의료계와 소통 정례화,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

□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,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비급여·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서 마련 예정('24.12월)

<다양한 금융권 규제혁신 추진>

□ 금융규제혁신회의, 은행권 제도개선TF,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

-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('22.8월 개정), 상장폐지제도 개선('22.12월),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('23.7월 개정),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('23.5월) 등
- 대환대출, 예대금리차 공시강화('23.7월), 지방-시중은행 전환('24.5월 인가) 등
- 임신·출산 보장 보험상품 출시('24.11월) 대리운전자보험 할인제도(9월) 출시,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(9월),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(11월 등)

☞ (향후 추진계획) 진행중인 보험개혁회의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, 주요 분야별 보험업 개혁방안* 마련·발표(~'25.1월)

* 주요 보험상품(실손·자동차·연금) 개편방안, 판매채널 개편방안, 미래성장과제

- 향후, 금융규제혁신회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금융업권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규제혁신 추진

<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>

- 저성장, 고령화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하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진출 및 해외투자 확대 적극 지원
- 금융권 글로벌화 지원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전담 조직인 「**금융 국제화 대응단**」 신설·운영('23.1월~'24.2월)
- 국내 금융사 및 금융 유관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**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·기능 강화***('24.3월)
- * (예) 해외금융포럼 개최횟수를 연 1회→2회로 변경하여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협력 모색
- **한국 금융권(K-금융) 해외진출 활성화**를 위해 고위급 해외방문 등을 통한 **금융외교·협력 대폭 강화**

< 주요 해외방문 사례 >

- 금융위원장 일본 방문('23.10월)을 통해 '**16년 이후 중단된 양국 금융당국간 서틀회의 재개**에 합의하여 긴밀한 소통·협력체계 구축
- 금융위원장 폴란드 방문('24.3월)에 이어 폴란드 금융감독청장 방한('24.11.13일 예정)을 통해 **방산·원전 등 금융지원 발판 마련**
- 부위원장 중앙아시아(우즈베키스탄·키르기스스탄, '23.5월), 동남아시아(인니·베트남·홍콩, '23.9월/싱가포르·태국, '24.2월), EU(유럽중앙은행(ECB)·리투아니아, '24.10월) 방문을 통해 **K-금융 세일즈**

⇒ '22.6월 대비 '24.6월 국내 금융회사 **해외점포의 총 자산규모는 14% 증가**하고 **당기순이익은 18% 증가**

- 글로벌 투자자 대상 IR을 지속적으로 실시*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와 적극적인 의견 교환

* 홍콩('23.9월), 싱가포르('24.2월), 런던('24.7월) 현지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자본·외환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소개

국내에서도 외국금융회사주최 해외투자자 컨퍼런스 참석, 외신기자 대상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참가자와 소통

- ☞ (향후 추진계획) **지역별 교두보 국가·기관**을 선정하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**K-금융의 외연을 지속 확장**

6 실물지원과 미래문제에 대비

<정책금융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·현장 중심으로 전환>

□ 그동안 공급자·정책기관 중심의 정책금융을 수요자인 **산업현장과 민간금융기관과 협력**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

❶ 금융위와 산업부처들이 참여하여 **정책금융지원협의회**를 구축·운영하여 각 부처별 산업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제 **현장수요**를 반영

* '23년 91조원, '24년 102조원+@ 자금이 5대 중점분야(첨단, 성장, 사업개편 등)에 집중공급

❷ '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**수출어려움**(12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) 대응, 수출기업 의견 바탕으로 **23조원+@ 수출금융지원방안*** 추진('23.8월)

* 판로개척 지원, 수출산업 저리대출, 시중은행 협업으로 선물환 등 수수료 인하 등
☞ '2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되어 **'24년 수출액 5,662억불(1~10월)로 사상최대치** 달성

❸ 기업성장단계별로 자금상황 차별화에 대응하여 민관합동으로 중소, 중견, 대기업 **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**('24.2월, 76조원+@)

* 은행권 최초 중견기업 전용대출·펀드,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, 재기지원 강화 등
☞ 대책 발표 후 '24.9월까지 52.2조원 자금지원(은행참여 14.4조원 포함)

❹ 지역의 인구·경제활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**지역활성화투자펀드**(매년 3,000억원) 신설 및 **남부권 지역금융 지원 확대***

* 산업은행 지역 주력산업 지원프로그램 12조원으로 확대 등

❺ 저탄소 전환 및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 위해 정책금융기관·민간금융사 협력으로 **대규모 기후금융지원방안***('24.3월, 420조원) 마련

* 사상 최초 민관합동 친환경에너지펀드인 미래에너지펀드(9조원) 결성 등 포함

☞ (향후 추진계획) 세계 무역질서 변화, 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여 정책금융을 **고도화**하고 산업별·지역별 상황에 맞는 **효율적 지원방안 마련**

참고1

금융분야 주요 성과 (통계수치)

구분	제목	주요성과
민생금융 활성화	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	■ 약 29만명, 16조원 이동 ■ 대출금리 평균 1.53%p 하락, → 1인당 연 176만원 이자 절감
	이자환급 등 상생금융	■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에 은행권 자율(2.1조원), 재정(0.3조원) 등 총 2.4조원 지원 ■ 금융업권별로 금리·수수료 인하, 채무감면 등 총 1.6조원 지원
	중도상환수수료 개편	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경감(추정) : 연간 총 3,000억원 → 1,500억원 * (주 담 대) 1.2~1.4% → 0.6~0.7%, (신용대출) 0.6~0.8% → 0.4% 내외
	정책서민금융	■ ('20) 8.9 ('21) 8.7 ('22) 9.7 ('23) 10.6 ('24.1~9월) 7.0
	금융-고용-복지 연계 지원	■ 고용연계 1.6만명, 복지연계 4.9만명('24.1~10월)
	새출발기금 채무조정	■ 15.0조원(9.3만명) 신청, 4.5조원(5.5만명) 약정('24.10월말, 잠정)
	신용사면	■ 개인 약 266.5만명, 개인사업자 약 20.3만명

금융시장 안정	시장안정 프로그램	■ 50조원+α('22'10월) → 94조원+α('24.8월) ■ 회사채 3년(AA-) 금리(%)/스프레드(bp) : ('22)5.20/148→('23)3.89/73→('24.10월)3.50/57
	가계부채 관리	■ 가계부채/GDP 비율(%) : ('21)98.7 → ('22)97.3 → ('23)93.6 → ('24.2Q)91.1
	부동산 PF 연착륙	■ PF-ABCP 발행금리(%)/스프레드(bp) : ('22.11월) 7.46/411.8→('24.8월) 3.78/49
국민자산 형성	청년도약계좌	■ 153만명 가입(가입대상 청년의 1/4) ■ 가입자의 약 90% 납입 유지
	기업 밸류업	■ 68개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관련 공시 (본공시 38개, 예고공시 30개 / '24.11.7.기준) ■ 자사주 매입 109%, 소각 228% 증가 ('24.1~10월, 전년 동기 대비) ■ 현금배당 3.7% 증가('24.上, 전년 동기대비)
금융산업 발전	은행권 경쟁촉진	■ 32년만에 시중은행 출범(대구은행 전환)
	망분리 규제	■ 10년만에 망분리 규제 개선 ■ 망분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 141건
	실손청구 전산화	■ 15년만에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(법개정) ■ 병원·보건소 총 4,377개 참여, 실손24 앱 가입자 수 43만명
	해외진출	■ '22.6~'24.6월 중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자산규모 14% 증가 및 당기순이익 18% 증가
실물지원	수출금융 지원방안 ('23.8월)	■ 23조원+@ 규모('24.9월까지 37.6조원 지원) ■ '24년 수출액 5,662억불(1~10월)로 사상최대
	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('24.2월)	■ 76조원+@ 규모('24.9월까지 52.2조원 지원)
	기후금융지원방안 ('24.3월)	■ 2030년까지 총 420조원 규모 지원 ☞ '24.9월까지 48.6조 지원

참고2

금융분야 입법성과

□ '22.5월 이후 본회의 통과 법안 총 41건(국정과제 관련 법안 9건)

법률명	주요 내용	통과 일자
외부감사법	· 소규모 상장사(직전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 1천억원 미만)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	'22.12.28.
자산공사법	·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정자본금을 상향 (3조원→7조원)	'22.12.28.
보험업법	· 보험사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	'22.12.28.
외부감사법	· 투자자 등 제3자로부터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증선위에 증선위 안건, 의사록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	'23.2.27.
은행법	·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 상향규정(「은행업감독규정」→법률)	'23.2.27.
인터넷전문은행법	· 現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인(중소기업 제외)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→ 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목적의 신용공여는 허용	'23.2.27.
농어가저축법	·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의 범위 확대	'23.2.27.
신용협동조합법	·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률에 명시	'23.2.27.
여전법	· 전자문서를 통해 약관 주요 거래조건 등 제공 허용(신용카드사할부금융회사)	'23.2.27.
자본시장법	· 조치명령 대상 확대, 구체적 수단 규정, 요건 구체화	'23.2.27.
공인회계사법	·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확대	'23.2.27.
화재보험법	·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안전점검시, 정해진 서식 활용 의무화 · 화보협회가 안전점검 결과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	'23.2.27.
통신사기피해 환급법	·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및 제재 강화 * 국정과제 63-5 : 서민·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	'23.4.27.
금융소비자 보호법	· 방문판매원 명부관리, 전화권유 수신거부 의사등록, 판매자 입증책임, 소비자에 불리한 계약 무효 등 규정	'23.6.21.

법률명	주요 내용	통과 일자
자산유동화법	·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· 유동화증권 전반(등록+비등록)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	'23.6.21.
주택금융공사법	·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주택가격 상한 확대(9억→12억) * 국정과제 9-3 :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	'23.6.21.
위원회정비법 (공인회계사법)	· 공인회계사 '자격제도심의위원회' 및 '징계위원회'를 '자격·징계위원회'로 통합 * 국정과제 13-2(행안부 주관) :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	'23.6.21.
신용협동조합법	· 신탁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의무화	'23.6.30.
상호저축은행법	· 저축은행 지점·출장소 설치규제 완화, 임원 연대책임 완화	'23.6.30.
가상자산법	·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* 국정과제 35-1 : '디지털 자산 기본법' 제정	'23.6.30.
자본시장법	·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* 국정과제 36-6 :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* 국정과제 63-5 : 서민·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	'23.6.30.
전자금융거래법	·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, 선불충전금의 보호,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,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등 규정	'23.8.24.
행정법제혁신법	· 과징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,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	'23.8.24.
보험업법	·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	'23.10.6.
지배구조법	·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·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부여 ·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* 국정과제 34-1 :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對고객 책임성 제고	'23.12.8.
신용협동조합법	· 조합원 자격요건 및 적립금 규정 등 개정	'23.12.8.
기업구조조정 촉진법	·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을 3년 한시법으로 재입법 ·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 정비 및 제3자 신규신용공여 제도 신설	'23.12.8.

법률명	주요 내용	통과 일자
개인채무자 보호법	· 금융회사-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· 연체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·추심 부담 완화	'23.12.20.
공인회계사법	· 회계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(회계사 10명→7명) · 공인회계사 등록·갱신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 마련	'23.12.20.
신용보증기금법	·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* 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 *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,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	'23.12.20.
자본시장법	· 상장회사 내부자(임원, 주요주주 등)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 부과 * 국정과제 36-5 :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	'23.12.28.
보험업법	· 보험협회 업무의 법적근거 마련 및 공정성 제고와 손해사정업무의 공정·타당성 확보	'24.1.9.
신용정보법	· 상장된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금융기관 출자의무제 폐지	'24.1.25.
자본시장법	·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·감독 강화	'24.1.25.
보험사기방지법	·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권유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및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	'24.1.25.
유사수신행위법	· 법령에 따른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하도록 함. * 국정과제 63-5 : 서민·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	'24.2.1.
통신사기피해 환급법	· 통장협박,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법제화 등 * 국정과제 63-5 : 서민·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	'24.2.1.
서민금융법	· 금융회사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	'24.8.28.
예금자보호법	·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(0.5%) 존속기한('24.8.31)을 '27.12.31일 까지 연장	'24.8.28.
예금자보호법	·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	'24.9.26.
자본시장법	·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,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	'24.9.26.